

일본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수시)

(2013년 6월 3일)

(오사카aT)

구분	핵심 내용
라벨링	☐ 일본의 수입가공식품의 원료, 원산국 표시

항목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대처 방향
	☐ 주요내용 ○ 최근 급증하는 한국의 가공제품의 원료, 원산국의 표시방법을 명확화 - 최근 한국 수입제품이 급증해 일반소비자가 한국 직수입 상품을 선택 할 때에 원료, 원산국의 식품표시가 중요시 되고 있음. - 수입 원료 표시방법 : 일본 소비자청에서는 원료, 원산국 표시의무가 있는 품목(첨부자료1 참고)을 규정하고 있음.가공식품의 원료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원료산지(국)를 표시해야 함. 단, 원산국과 원료산지가 같은 국가일 경우에는 원료산지를 표시 하지 않아도 됨. - 원산국 표시방법 : JAS법 수입품(첨부자료2 참고)은 원산국명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음. “상품 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 되는 행위를 실시한 국가를 원산국으로 표시함. 그 행위에 해당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의 수출국을 원산국으로 표시함. ☐ 시사점 / 대처 방향 ○ 일본 현지로의 수출 시 “한국산”표시 혹은 주원료의 원산지에 “한국산”표시가 명기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는 현지시장에서의 “한국산”을 홍보하는 마케팅 방법으로도 활용가능 함. 한편, 일본의 원료, 원산국 표지에 관한 기준이 자주 변경되고 있으므로 수시로 관련 업데이트 정보에 관심을 두어야 함 ○ 최근 원료는 수입품이지만 일본 국내에서 가공한 제품을 “유명 일본산”이라고 설명한 제품 등이 증가. 소비자청에서 행정적인 조치가 있따르고 있음 ○ TPP체결 후에는 여러 국가에서 가공된 제품이 복잡하게 얽혀 다양한 색의 식품표지를 한 제품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에 중장기적으로 원료, 원산국 표지에 대한 일본현지의 기준은 더욱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시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 ☐ 출처 : 소비자청 식품표시과 홈페이지 (http://www.caa.go.jp/foods/index.html)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 표시의무 대상품목 (22품목)

1. 건 버섯류, 건 야채 및 건 과실
2. 염장한 버섯류, 염장한 야채 및 염장한 과실
3. 삶은 또는 찐 버섯류, 야채 및 콩류
4. 이종 혼합한 컷 야채, 이종 혼합한 컷 과실과 그 외 야채, 이종 혼합한 과실과 버섯
5. 녹차 및 녹차음료
6. 떡
7. 껍질 땅콩, 볶은 땅콩, 튀긴 땅콩 및 볶은 콩류
8. 흑설탕 및 흑설탕 가공품
9. 곤약
10. 조미한 식육
11. 삶은 또는 찐 식육 및 식용계란
12. 표면을 구운 식육
13. 프라이종류로 튀김옷을 입힌 식육
14.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은 식육 및 그 외 이종 혼합한 식육
15. 음건 어개류, 소금 말린 어개류, 음건 어개류 및 다시마, 건 김, 구운 김, 및 말린 해초류
16. 염장한 어개류 및 해초류
17. 조미한 어개류 및 해초류
18. 다시마 말이
19. 삶은 또는 찐 어개류 및 해초류
20. 표면을 구운 어개류
21. 프라이종류로 튀김옷을 입힌 어개류
22. 4번 또는 14번 이외에 신선식품을 이종 혼합한 것

개별로 표시의무가 있는 4품목

1. 농산물 절임
2. 야채 냉동식품
3. 장어 양념구이
4. 가다랑어포

JAS법 상 수입품의 규정

1. 용기 포장으로 수입되어 그대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제품수입)
2. 포장하지 않은 형태로 수입된 것을 일본국내에서 분류해 포장한 제품
3. 제품수입을 한 것을 일본국내에서 분류해 재포장한 제품
4. 그 외 수입된 제품에 관해, 일본국내에서 “상품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가 실시되지 않은 제품

출처 : 소비자청 가공식품품질표시기준 (http://www.caa.go.jp/jas/hyoji/kijun_ltiran.html)

“상품내용의 실질적인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은 행위

1. 상품에 라벨링 및 그 외의 표시를 하는 행위
2. 상품을 용기에 담는 또는 포장을 하는 행위
3. 상품을 담는 또는 새로 짝을 짓는 행위
4. 간단한 부품을 형성하는 행위

여기에 더해 관세법기본통달에서는

5. 상품의 절단
6. 유송 또는 보존을 위한 건조, 냉동, 소금물 절임 또는 비슷한 행위
7. 상품의 혼합

출처 : 소비자청 식품표지의 관한 팸플릿·Q&A·가이드라인 등
(<http://www.caa.go.jp/jas/hyoji/ga.html>)